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필요성과 역할



글/이 경 근 (한국전기안전기술공사)

1. 전기대행업의 역할

전기대행업의 기업에서의 역할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업종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될 사회적 배경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다

이윤의 종류는 직접이윤과 간접이윤으로 나뉘는데 직접이윤은 생산가에서 비용을 제한 값으로 누구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만, 간접이윤은 생산설비의 중단,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시 피해의 축소, 인간의 노동력, 창의력 저하로 인한 능력감소 방지 등을 돈으로 산출한 이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간접이윤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튼튼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가격경쟁에서 쳐질 수 밖에 없다.

그럼 전자인 직접이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춰야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공정을 “세트-조립식”이라고 하는 분업화를 해야했고 분업된 단위업은 한가지일만 전담하다보니 전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단위부속품 전문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조립만 하는 경영방식으로 바뀌어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급속도로 분업화와

전문화의 구조로 변해버렸다.

그 결과 기업측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대량 생산화 하여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업화, 전문화가 우리들 가정까지 파고들어 와 파출부 제도, 심부름 센터, 리스업, 수리센터, 대행업 등 소위 전문업체에 맡기는 위탁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배경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이다.

다음은 기업이 간접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전기대행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간접이윤을 시간절약, 능력향상, 생산설비 수명연장 등과 같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 이윤으로서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곳에 투자한 기업은 대기업이 되었고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다. 국가가 사회간접 자본인 도로, 항만, 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큰 국가적 이윤을 추구하자는 수단이라고 볼 때 시대는 바야흐로 유형경제에서 무형경제의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형경제가 1, 2차 산업의 육체적 및 실물경제라고 한다면 무형경제는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 정보화 산업과 같이 정신적인 경제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이윤도 직접이윤은 유형

경제로, 간접이윤은 무형경제로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산업화 진행이 유형을 지나 무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기업들은 분명히 직접이윤에서 간접이윤쪽으로 시선을 돌려 이쪽에 투자를 하는 편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 전기대행업의 주업무 테마는 설비보존관리 (Maintenance)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물이나 모든 설비를 전기화제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다음으로는 설비의 사전점검으로 기기의 수명 연장은 물론 고장으로 인한 생산중단, 기기고장, 원료·재료 손실, 시간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업무로서 간접이윤쪽에 속하고 그래서 기업주에게는 관심이 덜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업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구상해야만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직접이윤은 오랜 세월동안 모든 “아이디어”를 소모하여 한번에 큰 폭의 이익을 증대시키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미지의 세계인 간접이윤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전기대행업이 기업에 주는 역할은 설비보존관리를 통해서 고장과 사고의 예방 그리고 설비의 수명연장 및 사고시 긴급복구업무를 통해서 기업에 간접이윤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이제야 바야흐로 보험의 시대, 인스턴트 시대, 대행업의 시대이다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기업은 상대가 거래를 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앞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 능력의 담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전문업체에 전기설비관리를 위탁한 업체는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 및 안전성의 확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대출받기가 용이한 시기가 도래하리라 판단된다.

“매월 보험료 지불은 억울하다.”, “매월 전기대행료 지출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중소기업은 벗어나야 한다. 지금시대에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지 않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대부분이 미래의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처럼 아무런 불만없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전기대행업에 전기시설물을 위탁하는 행위는 보험의 성격은 물론 간접이윤의 혜택까지 겸하고 있어 보험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한번의 보수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했다고 가정할 때 기업측에서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몇십내지 몇백배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설비 파손품 교체 및 정전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손실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품의 단위품목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주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않듯이 설비보존관리도 용량이 적은 어느 한도까지의 설비는 전문대행업체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제품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전기대행업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역할을 알아 보았는데 그럼 과연 전기대행업이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요약해 보기로 하자.

2. 전기대행업이 기업에 주는 혜택(기설과 신설)

가. 기설(빌딩이나 공장)

(1) 설비가 작은 기업에서 전기기사 채용시의 임금보다 대행료는 저렴하므로 기업의 비용지출이 절감된다.

(2) 아주 큰 사고나 고장이 아닌 일반보수는 무료 서비스이므로 외부 전업사에 의뢰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보통 전업사에서 한번 출장시 기본 5만원 이상을 요구함).

(3) 점검자가 자격소지자이고 경력이 대부분 10여년 이상자들이라 고장수리 능력이 정확하고 신속하다 (고장수리 업자들은 대부분 자격소지자와 같은 전문실력이 부족).

(4) 측정기가 다양하고 수시로 측정 점검하므로 설비수명이 길어지고 양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전기설비 용량이 적은 저압수용가에는 전기관계자가 한사람도 없어 사소한 부분까지 대행업체에서 설비를 관리하여 주므로 수용가는 대행료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작은 용량의 수용가에는 전기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기선을 마구 가설하기 때문에 큰 수용가보다 전기화재 발생률이 높다).

(6) 전력사용합리화의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

나. 신설(공사중)

전기사업법에는 공사계획 신고서류에 필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날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그 현장의 공사내용과 설비시설시 감리 감독하기 위한 취지임.

(1) 전기공사를 대행업점검자가 감리 감독하므로 공사내용이 충실하다

㉠ 과거는 감독자가 없어 전기자재를 규격미달품 등 불량품을 사용해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기화재 위험이 많았음.

㉡ 공사가 끝나면 감독자는 그 사업장의 대행업 담당점검자가 되며 사실상의 그 업주의 직원 신분이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음.

(2) 전기자격소지자의 공사현장 감독제 실시로 인해 부실 공사업자가 사라지고 전기공사가 견실해짐.

이상과 같이 전기대행업은 '91년 1월 24일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만 2년을 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업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자부한다. 물론 일부 혜택을 아직도 받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불평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지금까지 지출한 대행료의 몇십 내지 몇백배의 혜택을 받을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전기는 다른 업종과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이며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기업주는 그저 전기화재보험에 들어있는 셈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후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기회가 있어 점검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점검한 점검 기록지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점검자는 이런 위험요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철저한 점검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일일이 기재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3. 맺음말

끝으로 정부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험의 시대, 대행의 시대로 가는 것은 사회발전의 시대적 요구이며 필연적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가가 분담하여야 할 책임과 고통을 사회단체에 위임함으로써 국가는 홀가분해지고 또 당사자는 보상과 서비스로 현재와 미래를 보상받게 되고 사회단체는 이익과 전문성이 점점 더해지는 등 고통분담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분야가 유익한 이익분담으로 효율적인 사회, 즉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전기대행업은 우리나라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벌써 '70년대에 시행했고, 또 대만은 '8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늦은 '90년대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만2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시정 및 보완할 점이 많아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

이 법개정의 취지는 그 당시 산업발달로 기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국가에서 배출하는 자격소지자 수로는 이 증가를 충당할 수 없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인이 담당하는 업체수를 한자리 숫자에서 두자리 숫자로 늘려야겠다는 취지로 과거의 개인에서 현재의 대행업체로 승격, 개정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배려에서 법개정을 했는데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에서 대행료 부담을 운운하며 정부에 민원을 탄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앞서 말한 간접이윤에서의 보상을 전혀 계산치 않은 단견이므로 국가에서 강행과 설득으로 선도해 나아가야만 한다. 국가나 기업은 먼 장래를 보고 지금의 고통을 참는 지혜와 슬기가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전기대행업 시행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정부가 보다많은 관심과 애착의 눈으로 육성하여 명실공히 전기대행업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